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2조의 요약

-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항목으로 열거(시행령 제19조제9호)되어 있지만, 본 조는 자산평가손실을 비용·손실로 처리했다 하여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그러나 해당 자산이 원가에 투입되거나 매각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거의 평가손실원천의 손실이라도 손금으로 반영됨.
- 자산의 평가손실 중 손금산입되는 것 : 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론에 의한 평가손실(원가법 적용금액과 장부상 기재금액과의 차이액은 손금산입됨), 파손·부패 등 사유로 정상가액 판매불능자산, 천재·지변·화재 등 사유로 파손·멸실된 것, 창업투자회사·신기술금융회사 보유주식의 부도발생시 평가손

●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보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 제22조본문)

① 본 조 개요 및 자산평가차손의 손익여부

본 조는 법인보유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비용·손실계상하여도 평가손을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나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자산가치 감소로 인한 평가손실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 제15조의 익금의 정의에서 관련 시행령 제11조제4호는 자산의 평가이익을 수

익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9호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비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산 유 형	평 가 차 손	평 가 차 익
일반자산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 재고자산(저가법 적용)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저가법 적용이므로 해당 없음.
재고자산 계정의 유가증권(유가증권으로 봄) 유가증권(원가주의)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재고자산(파손·부패)판매불능	손금산입	해당없음.
고정자산(천재·지변·화재·파손·멸실)	손금산입	해당없음.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금융회사만 인정)	당기 손금원칙임.	당기 익금원칙임.

②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의 이유

재고자산 등은 법인의 정상적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소득의 창출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법인의 정책결정이나 경제환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처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었거나 보유과정에서 평가이익이 발생되면 익금이 되고 손실이 발생되면 손금이 되므로 평가손실이 계상되어도 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상순환 재고자산이나 화폐가치변동 외화자산 이외의 자산은 그 자산 보유목적 자체가 당해 자산의 가치증액이 아니고 기타의 생산·제조목적이므로 이로 인한 단기적 개념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권리의무확정주의 개념에 근거한 법인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즉, 이러한 자산은 실제의 거래시에 익금이나 손금으로 결과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시점에서는 당해 자산의 고유 목적에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가차손익은 손금 및 익금에 불산입한다.

③ 기업회계상 모든 자산의 평가차손

본 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다. 평가손실이 손금산입되는 경우는 재고자산 등인데, 이밖에 저가법 적용받는 재고자산, 창업자의 부도발생으로 장부가액에서 감액된 주식의 시가차액, 외화자산, 부채 등으로 한다. 재무제표상으로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 등은 저가법 적용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산들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

상하였다면 본 조단서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손금불산입한다.

④ 감정가액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도 손금불산입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에 따라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된다. 이밖에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된다.

II. 세법상 규정된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법 제22조단서)

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① 일반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법인 일반자산의 평가손실에 대하여는 본 법 시행령 제19조제9호에서 이를 손비의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사항이다. 본 조는 재고자산 등과 같이 단서로 별도 규정된 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평가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본 조단서가 본 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가손실 손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② 주식 등과 채권·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재고자산은 언제나 정상적 영업순환 과정에서 원가로 반영되므로 당기에 손익이 나타난다. 따라서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 이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개념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주식·채권 등의 보유유가증권도 손익순환과정에 반영되어도 원가주의만 적용하므로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③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법인은 단기자금의 운용과 경상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데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된다. 결국 유가증권인 경우 금융보험업자는 재고자산개념으로만 평가손실이 손금산입되지만, 일반법인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손금불산입사항이다.

④ 원가법상의 평가방법 적용되므로 시세차액의 평가손실은 없음

본 법 시행령 제74조가 재고자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며, 더 낮은 시가가준인 저가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가하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감이 계산된다. 이러한 평가감금액은 손금산입된다.

그러나 시행령 제75조가 유가증권은 원가법 중 개별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혹은 시가법(시가법은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등 유가증권만 해당)만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발생되지 않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평가차손의 손금산입은 별의미가 없는 규정인데, 발생될 수 있다면 유가증권의 숫자변경 및 기타 분실과 취득시기와 금액차이에 따른 평균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주로 수량 감소 등) 금액인 경우만 손금산입된다.

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과 손금·익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의 시행령 제7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평가 및 손익반영을 한다. 유가증권평가는 원가법만 인정된다. 따라서 주당 단가하락관련 유가증권 평가 손실금은 무조건 손금부인되며, 유가증권평가이익도 무조건 익금불산입한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011. 3.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 제 (2009. 2. 4)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은 손금산입함

본 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와 제4호 및 제5호는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금융회사 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과 일부 파생상품(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자산의 취득원가 계상금액 혹은 장부가액대호가 아니고 사업연도 일 현재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평가(시행령 제76조제1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일반법인 포함) 등의 당연도 평가손익은 그대로 손금 및 익금반영된다.

3. 파손·부패·멸실자산의 손금산입

① 파손·부패 재고자산

파손·부패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는 평가손실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감소(감액)된 것이므로 손금산입으로 규정된 것이다.

② 천재·지변·화재·수용 등으로 인한 파손·멸실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실질적인 파손이나 멸실로 인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손금산입된다고 예외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파산인 경우도 해당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폐광 및 고유목적 사용불가능한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채굴예정량이 소진된 폐광도 손금산입하며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광업용 고정자산의 평가손실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광구내의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라면 완전히 고유목적 사용불능상태가 아니므로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

④ 평가손실의 계산방법과 시가의 개념

평가손실은 정상적 거래시가와와의 차이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면 된다.

4. 창업투자회사 등의 보유주식 중 부도발생주식평가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당해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주식의 평가손금액(장부가-처분가능시가) 상당액은 손금산입해준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주의로 평가손이 손금불산입되는 일반 원칙에 대한 특별예외 내용이다.

5.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감

일반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손금에서 보유주식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업투자회사 등의 보유주식 중 부도발생 평가손도 손금인정되며, 또한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하면 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시가평가에 따른 손금산입을 인정한다.